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0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나경원 · 김은혜 · 고동진
김성원 · 서지영 · 박충권
구자근 · 박준태 · 박성민
조배숙 · 김재섭 · 송석준
최은석 · 주진우 · 김승수
백종현 · 강승규 · 김미애
김대식 · 박덕흠 · 광규택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을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에 임용하는 경우
- ③ 국가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원조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 분야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2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 1.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에 임용하는 경우 ② ----- -----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공무원으로

	<u>임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등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u> <u>원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u>
--	--